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39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7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홍배 · 손 술
이해식 · 임미애 · 문금주
이춘석 · 서영석 · 이재관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.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,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.4%에 불과하며, 국민연금(정규 87.9%, 비정규 37.1%) · 건강보험(정규 95.0%, 비정규 53.2%) · 고용보험(정규 91.8%, 비정규 53.7%)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.

또한 퇴직급여(정규 95.6%, 비정규 46.0%) · 상여금(정규 89.0%, 비정규 39.7%) · 시간외수당(정규 69.1%, 비정규 31.2%) · 유급휴가(정규 87.2%, 비정규 39.0%)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.

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

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‘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’이 ‘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’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·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.

이에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신설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,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6조(균등한 처우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6조(균등한 처우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 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,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.</u></p> |